탄 원 서

제출 법원	사건 담당 재판부 귀중 [현재 재판부·사건번호 제출 전 확인]
대상자	김정근	준장	전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
혐의 및 절차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관련
사건번호	_____ [공식 사건검색 후 기재]

1. 시민으로서 드리는 탄원

저는 피고인 김정근과 친족·친분 관계가 없는 시민이며 전체 재판기록을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제3공수여단 출동 명령과 현장 강제조치 사이의 차이를 사실과 증거로 구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피고인의 무고함이나 인품을 직접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중대한 사건일수록 개인의 실제 행위와 고의, 책임 범위를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 글을 올립니다.

2. 현재 확인되는 사건 경과

특검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병력 출동 지시 등 계엄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고, 공동사건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별도 군 징계 절차에서 파면 처분이 보도되었습니다. 특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병력 출동 지시가 중요임무 수행이라고 주장했고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개별 최후진술의 전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3. 개인별로 가려야 할 사실

상급부대의 명령을 받은 시각, 출동 목적에 대한 설명, 실제 부대에 내린 명령의 원문, 투입 규모·장소와 임무 변경 경위를 구별해 확인해 주십시오. 출동 자체와 시설 점거 또는 강제처분의 직접 실행 여부도 나눠 봐야 합니다.

4. 반대되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계엄 선포에 관한 단순 인지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중요임무 수행은 다릅니다. 다만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행위가 면책되지는 않으므로 직위와 재량, 위법성 인식, 집행을 저지할 기회를 함께 판단해 주십시오.

5. 적용 법률과 판단 요소

형법 제87조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의 유형 구별)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3공수특전여단의 출동 명령이 언제, 누구에게서 왔는지와 본인이 어떤 불법 목적까지 인식했는지를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명령을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지만, 부대 이동만으로 구체적인 시설 점거 목적이 자동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6. 사건기록에서 특정하여 확인할 증거

상급 부대 지시와 여단 명령의 원문, 선관위 출동 시각·이동 경로, 현장 진입·통제 여부, 임무 중단이나 복귀 지시를 시각순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7.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예비적 양형 요청

군 징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형사책임을 소멸시키지는 않지만, 범죄가 인정될 경우 개인이 부담한 제재와 실제 실행 결과를 구분해 양형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주시되, 확인되지 않은 반성·가족관계·건강을 선처 사유로 추정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8. 결어

특히 제3공수여단 출동 명령과 현장 강제조치 사이의 차이를 상세한 증거로 확인하시어, 피고인 김정근의 행위 중 고의와 구성요건의 증명이 부족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주십시오.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개인의 실제 역할에 상응하는 판단을 청합니다. 재판의 독립성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

확인 가능한 공개 출처 (보도는 공판조서·판결문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09.18 뉴시스 | 군 관계자 8인 결심공판·구형·방정환 최후진술